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1
년
9
월
15
일
(
수
)
·
주
간
제
37
·
38
호
·
통
권
제
1
5
3
6
·
1
5
3
7
호
·
원
천
징
수
개
요
·
구
독
료
·
월
3
0
0
0
0
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 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9/ 15 통권 1536 · 1537호(합본)

※ 추석 연휴로 인하여
1536-1537호 통합 발행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왕일별 전문경영인

원천징수 개요

경영관리팀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자영업·중소기업 창업자가 직접 알아보고 실행할
세금·회계·재무 분야절차의 10가지

CFO·외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 원천징수 개요
-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연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직전 지급해도 배당소득 아님 (p.13)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경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戰略

< 한국의 상법상 각종 영리법인의 종류와 차이점 비교 >

| 개념구분 |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 합자회사 |
|----------|--------------------------------------|-------------------------------|-----------------|-------------------|
| 주주(사원)책임 | 무한책임 | 출자범위 책임 | 출자범위 책임 |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 |
| 설립발기인원 | 1명(동업가능) | 1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무한 1+유한 1) |
| 자본 1주 금액 | 해당없음 | 100원 이상 | 100원 이상 | 제한없음 |
| 지분양도 | 사업양도는 폐업임 | 양도자유 | 다른사원 동의 | 다른사원 동의 |
| 업무집행자 | 개인대표 (사업자) | 대표이사, 이사회 | 대표이사, 이사 | 업무집행사원 |
| 내부감사 | 해당없음 | 1명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은 예외) | 임의선임 (안해도 됨) | 해당없음 |
| 세금책임 | 사업주의 무한 책임 | 과점주주 납세 책임 | 과점주주 납세 책임 | 무한책임부담 |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외감의무 (규모 이상) | 좌동 | 해당 없음 |
| 성실 확인 | 대사업자 (업종별 15, 7.5, 5억 이상 등) | 부동산 임대법인 | 부동산 임대법인 | 부동산 임대법인 |
| 회사채 자본 | 해당 안됨 | 발행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36 · 1537 호 / 주간 37 · 38호

2021. 9. 15.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 · 주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과
- ⑪ 최고경영자의 세무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 한국의 상법상 각종 영리법인의 종류와 차이점 비교 | 표지 |
| 긴급시사해설 | 자영업·중소기업 창업자가 직접 알아보고 실행할 세금·회계·재무 분야절차의 10가지 | 2 |
| CEO에세이 | '왕일벌' 전문경영인 | 4 |
|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 정부지원 사업 관련 부가세 공제 문의 | 6 |
| | -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 7 |
| | - 외화 외주비 비용취소 시 문의 | 7 |
| 눈에 맞는 절세미인 |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 8 |
| 매일 절세재무요점 | - 추진중인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 | 10 |
| | -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주요 내용 | 11 |
| 직장인 Survival | 멋진 삶을 사는 비결 10가지 | 12 |
|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667, 2021.01.18) | 13 |
| | -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 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 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5694, 2021.02.17) | 14 |
| 세정뉴스와해설 | 중부세 부부공동 명의, 16일부터 고령·장기공제 신청 | 15 |
| 마케팅 Tax consulting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직접 지급해도 배당소 득 아님 | 13 |
| 세무정보 | - 원천징수 개요 | 16 |
| | -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 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23 |
| 회계정보 | -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40 |
| 세무환율정보 |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 준·재정환율 | 3 |

자영업 · 중소기업 창업자가 직접 알아보고 실행할 세금 · 회계 · 재무 분야절차 10가지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개념 구분 | 요건, 구분, 방법, 관련규정, 주실행자 |
|----------|---|
| 1. 업종선택 | ① 창업자가 직장근무하거나, 사업하던 분야 선택, ② 취미·선호가 일치하는지, ③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는지 |
| 2. 장소선정 | 유동인구 많은지, 배후자와 수요가 충분한지, 상권과 구매시장의 형성 여부, 온라인과 코로나 시대 비대면사업 추천 |
| 3. 시점선택 | 절실한 상황, 퇴직 · 전직 · 구조조정 권고사직, 조기퇴직혜택 등 |
| 4. 사업승인 | 위생, 보건, 환경, 위험물 등 사전등록 · 허가 · 요건충족사업은 등록증, 인가증을 먼저 받아야 함(자본금 요건, 인적자격 면허요건, 기술자요건, 필수설비 등) |
| 5. 설비공사 | 사업장 구입이나 임차, 필수설비 구입, 사업장 내외부공사 등 (대금지급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 6.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사무실 임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법인설립 등본)+특정사업등록 · 허가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 이전에도 등록신청가능 |

| | |
|----------|--|
| 7. 사업자통장 | 개인의 일반통장 이외에, 사업자 전용통장 개설(인근 은행) (제조업 등 1.5억 이상,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 도매업 등 3억 이상은 사업용계좌로 입출금 의무) |
| 8. 신용카드 | 사업용통장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발행받음(가능한 사업용 본인 카드로 지출·구입거래) (전자매출, 매입세금계산서와 급여지급, 신용카드거래 등이 모두 국세청 홈택스로 집계됨) |
| 9. 직원등록 | 임직원 채용시 4대보험 가입 및 신고(급여 책정, 4대보험과 공과금 등은 최소 18%, 퇴직금 외부예치신고(거래은행에 DC나 DB형 퇴직연금 가입), 회계·세금 외부 실행자 대리인 선정(내부경리인건비의 20% 내외) |
| 10. 자금관리 | 원재료 등 구입+매출, 수입 발생, 직원급여, 각종비용지출 등 - 큰 자금주통장 이외, 별도의 소액자금통장 개설(직원이 관리 : 위험 최소화)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통 화 명 | 9월 3일 (금) | 9월 6일 (월) | 9월 7일 (화) | 9월 8일 (수) | 9월 9일 (목) |
|-----------------------|--------------|--------------|--------------|--------------|--------------|
| 미 달 러 (USD) | 1159.70 | 1156.40 | 1157.30 | 1157.90 | 1164.50 |
| 일 본 엔 (JPY) | 1054.70 | 1053.72 | 1053.67 | 1049.82 | 1056.28 |
| 캐 나 다 달 러 (CAD) | 923.95 | 923.27 | 923.33 | 915.70 | 917.87 |
| 홍 콩 달 러 (HKD) | 149.23 | 148.81 | 148.87 | 148.92 | 149.7 |
| 위 안 화 (CNH) | 179.72 | 179.19 | 179.49 | 179.46 | 180.19 |
| 유 로 화 (EUR) | 1377.09 | 1374.03 | 1373.89 | 1371.24 | 1376.21 |
| 호 주 달 러 (AUD) | 858.47 | 861.69 | 860.51 | 855.28 | 857.71 |
| 싱 가 폴 달 러 (SGD) | 864.03 | 862.18 | 862.31 | 860.28 | 865.09 |
|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 278.91 | 278.89 | 279.00 | 278.64 | 280.30 |

‘왕일벌’ 전문경영인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몇해전 경제수석을 물러난 친구를 위해 동기들 몇이 모여 식사를 한적이 있다. 그때 그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의 경제관료인 친구불만이 생각난다.

"무얼 만들어내고 일하는 실천가보다 코멘트하고 비판하는 자가 너무 대우받는 한국이다." 건전한 비판도 실천만큼 중요하다는걸 모를리 없는 그다. 그러나 무얼 하고자하면 이러쿵저러쿵 얼토당토않은 비판과 시비에 유쾌하지 않았던 그의 말을 이해할만 했다.

벌에는 여왕벌은 있지만 왕일벌은 없는것 같다. 그러나 사람세상에는 일꾼중의 일꾼, 왕일꾼이 있다. 좋은 의미로 일에 중독된듯(Workaholic) 일을 즐거워하는 일벌레, 그들이 '왕일벌'이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한때 관료가 중추적 역할을 해냈고 요즘은 바로 기업의 경영자들이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들의 '실천적 역할'은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번영을 이끌어낸 실천가들 역시 수많은 기업의 CEO와 경영진들이다. GE의 잭 웰치와 제프리 이멜트, AT&T의 마이클 암스트롱과 데이비드 도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등 수많은 스타급CEO들과 불철주야 일에 몰두하는 경영자들이 미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또 그래야 한다.

'시장경제'는 정치적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한 사람의 유능하고 선량한 전문경영인이 열가지 좋은 제도보다 더 낫다"는 말에 공감한다. 그렇기에 창조적인 전문경영인들은 바로 한국의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경제는 정경유착에 따른 재벌위주 압축성장의 폐단이 상당히 있어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유능하고 선량한 전문경영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기업을 일구며 훌륭한 '선장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현재 정열을 바쳐 일하는 소중한 '햇불형 전문경영인'들이 도처에 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뒤를 이어 올바르게 성장하려고 열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어려운 구석이 많아 보여도 미래는 밝다.

만약 가깝고도 먼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국의 동북3성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권 속에서 한국의 남과 북은 매우 핵심적 교량형 전략기지다. 북으로는 러시아로, 서쪽으로는 신실크로드로, 동으로는 아태지역으로 뻗어나가는 중심지역이니 말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질적인 격차와 좁힐 수 없는 갈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만약 경합을 한다 해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문민 정부시절의 단순논리만으로는 곤란하다. 또 북쪽이 절대기근이라 해서 계속하여 무작정 거저줄수도, 주어서도 안된다.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들도록 그리고 '생선보다 낚시법'을 가르쳐주는게 현명하다. 북한 노동력은 아직 대부분 산업사회에 훈련되지 않은 노동력 수준이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도 딱 부러지게 내세울 것이 못된다. 다만 지난 개발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성장의 노하우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 노하우를 지닌 중심에 성장과 번영의 기술자인 '햇불형 전문경영인'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이 바로 먼 미래에 '구슬을 꿰도록' 도울 것이며 '낚시법'을 가르쳐줄 실천가들이다. 이 점에서 올바른 전문경영인들은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햇불형 경영인을 발굴해내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들의 자생과 확산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지원 사업 관련 부가세 공제 문의

Q 당사는 정부지원으로 인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은 공급가액은 정부지원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부가세만 당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
 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한 사업에서는 공급가액, 부가세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됐
 습니다.
 이럴 경우, 발생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세액불공제가 맞는지, 맞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잡으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
 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
 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문의

Q 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자소득을 낸 B법인이 소액부징수로 인한 세금 10원 미만 절사한 합계가 1,500원일 경우 B법인이
 세금환급신청시, 환급신청이 되지않는 경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원천세신고법인: A, A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했을경우 / 환급신청법인:B)
 ※ A법인은 이자소득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 A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B법인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다면 B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화 외주비 비용취소 시 문의

Q 외화 외주비 1,000usd(환율 1,000원)를 외상매입금으로 인식해놓은 상황에서 2개월 뒤 해당 외주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여 환입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환입시점의 환율이 1,100원일때 1,100원의 환율로 외주비를 마이너스하는게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외주비 인식 : 1,000,000원 (1,000usd, 환율 1,000원)

○ 2개월 뒤 외주비(1,000usd) 취소 : 환율 1,100원

이 경우 외주비 취소 시 환율이 변경되어 원화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데,

외주비는 최초 인식했던 1,000,000원만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 외주비는 1,000,000원을 인식했다라도 변경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주비를 1,100,000원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A 환차손익은 거래손익인데, 최초 인식한 매입의 지급의무가 사라졌다면 거래가 취소된 것이므로 환차손익 인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초 인식한 금액을 그대로 취소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무역조건에 따른 매출액 인식

Q 당사는 기존에는 수출제품에 대해 선적일자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근래 회계감사 이슈 사항으로 수출 무역조건에서 FCA 조건(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의 운송 차량에 상차까지)인 경우 상차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가세 신고시(당사는 매월 조기환급 신고) 선적일 환율과 상차일의 환율 차이는 매출액/매출채권 가감하여 기표하여 처리하면 될런지요?

A 수익인식은 회계기준대로 하여야 하므로 상차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수익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은 선적일기준이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액 신고를 위한 신고서상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실제 수익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서식 작성시에는 부가가치세법 따른 선적일환율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상담실 백종훈 차장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사규에 의해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

예전과는 달리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추세이다 보니 집(부동산)의 공동명의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매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사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또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당연히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 원천세과-502, 2011.08.18

귀 질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1 탐-52, 2006.1.16.)을 참조하시기바람.

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가 시내출장이 아닌 장거리 시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시외출장에서 발생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는 별도로 실제 시외출장에 지출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46013-575, 1997.02.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종업원 소유차량의 범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 자신의 차량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단독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이나 그 밖에 타인의 명의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자신과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차량의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차량을 소지한 직원이라고 누구에게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직원)이 자기소유(본인 단독명)의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월 20만원 한도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된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②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④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타인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여부

| 구 분 | | 비과세 여부 |
|-------------------------|-------------------|--------|
|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명의 차량 | | 불 가 |
| 공동명의 | 부부공동명의 차량 | 가 능 |
| |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 불 가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추진중인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

| | | |
|-------------------------|---|-------------------------------------|
|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상향 | 9억 → 12억원(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 보유기간 공제율(5%)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적용 (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
| 거주기간 공제율(40%) | 양도차익 5억원 이하 5억~10억원 10억~15억원 15억원 초과 | 보유기간공제율 40% 30% 20% 10%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일 산정방식 변경 |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된 경우 남은 주택 취득일에서부터 보유·거주기간 계산(현행) → 다주택 처분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기간 계산(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

화

창업 · 벤처기업 강화

| | 현행 | 개정 |
|-------------------|--|--|
|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대상 |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일몰 (~'21. 12. 31) |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3년 연장(~'24. 12. 31)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대상, 일몰 (~'21. 12. 31) |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 3년 연장 (~'24. 12. 31) |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누출 방지 및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 기업의 환경보호 노력 유도 |
| 도입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2025년 : 전환기간(수입품 탄소배출량 및 기납부 탄소비용 보고) 2026년 이후 : 본격 과세(탄소배출권 구매 의무 부과) |
| 적용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2026년 이후 적용대상 확대 가능) |
| 과세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
| 과세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자가 CBAM적용품목 수입시 탄소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 구매 |
| 감면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면 요청 가능 |
| 면제국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가진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최빈국 등에 대한 특별면제 검토 중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
| 3주택 이상 | | |



멋진 삶을 사는 비결 10가지

1. 힘차게 일어나라.
1년 중에는 365번의 출발 기회가 있다. 빠르냐 늦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다르게 연출한다.
2. 당당하게 걸어라.
당당하게 걷는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비쳐진다. 값진 삶을 살려면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3.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라.
내일은 내일 해가 뜰 때도 그것은 내일의 해다.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4. 시간을 정해 놓고 책을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지혜가 가득한 책을 소화 시켜라. 하루에 30분씩 독서 시간을 만들어 보라.
5. 웃는 훈련을 반복하라.
사람은 웃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바뀐다. 웃고 웃자. 그러면 웃을 일이 생겨난다.
6. 말하는 법을 배워라.
해야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분간하는 방법을 깨우치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것은 공해다.
7. 하루 한가지씩 좋은 일을 하라.
인생에는 연장전이 없다. 그러나 살아온 발자취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루에 크건 작건 좋은 일을 하자.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
8. 자신을 해방시켜라.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고 하지말라.
굳게 닫혀진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자.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9.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퇴색된다.
자신의 사랑을 뜨거운 용광로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0. 매일 매일 점검하라.
생각하는 민족만이 살아 남는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일 뿐이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식발행초과금 감액하여 주주에게 금전으로 직접 지급해도 배당소득 아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법령소득-4, 2021.01.22

질 의

- 질의법인은 000,000,000원을 ○○기금으로부터 투자받고 상환우선주(액면 5,000원) 00주를 발행함*
 - * 주식발행초과금 000,000,000원 발생
 - 2000.0.0. 상환우선주를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함
 - 2000.0.0.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0천만원을 감액하여 현금배당함

질의내용

- A주주가 납입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B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

[질의] 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 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 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중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

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1667, 2021.01.18

질 의

- (질의1)비영리법인이 원유구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인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원유수급조절자금으로 집행하는 '생산차액보전비'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낙농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지원금(이하 '출연금')을 지급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유수급조절자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생산차액보전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생산차액보전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국제세원-5694, 2021.02.17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할 예정

질의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외국 연금·기금 등에 배분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기업은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당시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법령소득-1296, 2021.03.08

■ 질 의

- 질의인은 (주)△△의 임원으로서 재직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주)△△는 질의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질의인의 퇴직 후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함

질의내용

-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재직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퇴직 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6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부세 부부공동 명의도 16일부터 고령·장기공제 신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중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말 중부세법이 개정돼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로 적용가능한 공제율은 80%까지다.

따라서 젊거나, 단기 보유의 경우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면 1주택 단독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 고용유지 완화에 경경대란 예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다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년은 빼고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2019년부터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나 공제를 받았다면, 대기업은 202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1, 2022년에 직원을 110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 때문에 2018년, 2019년 고용이 늘어났어도 상시근로자 유지조항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

던 중소기업들이나 일부 의료업계(병원)에서 못받았던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2021년 고용인원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유예된 것뿐이라서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이 되는 법 개정 이전하고 똑같다.

2019년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최저한세)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의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의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의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경연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원천징수 대상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 적용 대상 | |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세 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 법인세 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 |

2)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 구분 | 대상 소득 |
|---------|--|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 10% |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 20% |

●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구 분 | 납 세 지 |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구 분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이용 |
| 그 외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및 내국법인

| | | 과세표준 | 구 분 | 세 액 |
|----------------------|------|----------------------------|---|-----------|
| 개 인 |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 |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2% | |
|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 | | 그밖의 이자소득 | 14% | |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 | |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2% | |
|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 | | 그밖의 배당소득 | 14% | |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 |
| | | 퇴직연금·사적연금 | 3~5%, 4% | |
| | 기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초과 30% |
| |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
|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 20% | 봉사료 5% |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 법 인 | 이자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 그 외 | 14% | |
| |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구 분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
|------|-------------------|------------------|
| 이자소득 | 20%(채권이자:14%) | 20%(채권이자:14%) |

| | | |
|------------|--------------------------------|--------------------------------|
| 배당소득 | 20% | 20% |
| 부동산소득 | - | - |
| 선박등임대소득 | 2% | 2% |
| 사업소득 | 2% | 2% |
| 사용료소득 | 20%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 기타소득 | 20% | 20% |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 연금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 인적용역소득 | 20% | 20% |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양도소득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Min(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 구분 | 검토내용 |
|---------------|---|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 | |
|----------------|--|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구 분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
|---------|--|
| 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 이자·배당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기타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소득(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 사업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 퇴직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근로·퇴직소득

| 대 상 | | 교 부 시 기 |
|---------|--------|---|
| 교 부 시 기 | 계속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교부 ※ 다만,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즉시 교부 |
| | 중도 퇴직자 |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 | 일용 근로자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퇴직소득 | | 그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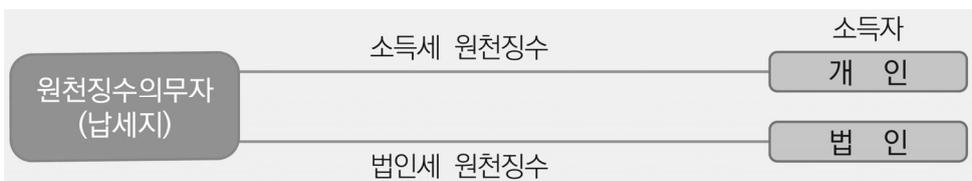
● 그 외의 소득

| 소득구분 | | 교 부 시 기 |
|-----------|---------------|------------------------|
| 이자소득·배당소득 | | 지급하는 때 |
|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 소득 |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 연말정산 대상 제외 소득 | 지급하는 때 |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적연금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 | 퇴직연금·사적연금 | 지급하는 때 |
| 기타소득 | 종교인 소득 |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 종교인 소득 외 | 지급하는 때 |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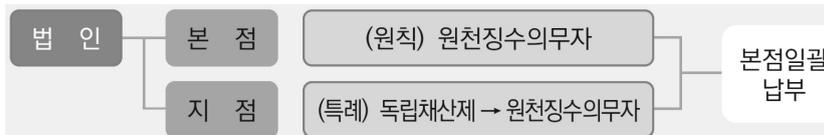
1)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 원천징수의무자 |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
| ① 거주자 |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
| ② 비거주자 |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
| ③ 법인 | 일반 | ㉓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㉔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㉓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㉔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 | 본점일괄 납부신청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 | |
|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2)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다만, 본점 일괄납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항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사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

$$\text{미납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5/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3/10,000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을 병행 ⇒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구 분 | 가 산 세 |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 부과 * 계산방법은 국세와 동일 |

※ 다만, 국가 등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사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납부 ○ → 가산세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 근로자가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감면

4 유의사항

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 대상소득 지급 → 원천징수 → 신고·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지급 시 신고·납부 방법
 - (신고)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납부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 포함)
 - (납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및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자세한 내용은 65.p 참고)

| 구분 | | 제출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 | 다음연도 3월 10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일용근로소득 |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활용
 -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분야에 이용

- 이를 제출 누락하거나 착오 제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정확히 제출하도록 유의

● 원천징수 누락 시 문제점

-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누락하게 되면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게 되어 관련 가산세도 추징당함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과소·무 납부세액 \times 3\% + (과소·무납부세액 \times 2.5/10,000 \times 경과일수) \leq 50\%]$)를 부담(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leq 10\%$)
-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소득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가산세로 부담

● 편리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제출과 동시에 오류 검증이 가능한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을 이용하면 관련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

● 반기별 납부제도

-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반기별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해 반기별 신고·납부 가능
 - *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과 관계 없이 반기별납부 신청 가능
- 상반기(6.1~6.30), 하반기(12.1~12.31.) 신청 가능

| 전 자 | 서 면 |
|---|--------------------------------|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 반기별납부를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규 사업자의 원천징수 관련 주요 오류 유형

| | | |
|---|---|---|
| 원천징수 누락 및 무납부 |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기한후 신고·납부 |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무납부하는 경우 |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작성·교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는 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 | 월1회 신고·납부 | 당월에 2회 이상 급여 지급하는 경우 급여 지급시마다 신고·납부한 경우 |
| * 급여를 4.5.에 지급하고, 상여금을 4.10.에 지급한 경우 한번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급여 지 급시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달리 신고·납부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기한후 신고, 지급명세서 기한후 제출 | 신고 방법을 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
| 근로·퇴직·사업·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 오류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 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 |

국가기관 등의 원천징수 유의사항

- 국가, 지자체 등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
는 경우에는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본점에서
작성

사례

A학교 교직원 급여는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강사료는 학교에서 지급한 경우, 교육청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납부 및 교육청 명의로 지급명세서 제출

| 구 분 | 교직원 급여 | 강사료 | 원천징수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
| A학교 | - | 기타소득 원천징수 | A학교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 |
| 교육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 | - | | |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사례

'21년 4월 급여와 5월 급여를 '21년 5월말에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두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 구 분 | 신고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신고연월 |
|-------|------|---------|---------|---------|
| 4월 급여 | 매월 | '21년 4월 | '21년 5월 | '21년 6월 |
| 5월 급여 | 매월 | '21년 5월 | '21년 5월 | '21년 6월 |

- 귀속연월이 같은 소득을 같은 달에 2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 제출

사례

'21년 3월 급여를 4월10일과 4월25일에 각각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 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작성

| 구 분 | 지 급 일 | 신고구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신고연월 |
|-------|------------|------|---------|---------|---------|
| 3월 급여 | 4/10, 4/25 | 매월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5월 |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A02)과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A04) 내용을 구분하여 신고서를 작성

사례

- 2020.12.15. 중도퇴사자(1명 연간 총지급액 10,000,000)
- 2020.12.31. 계속근로자(10명 연간 총지급액 120,000,000)

| 착오 기재(중복신고)한 경우 | 정상적인 경우 |
|---|--|
| 1) 2021.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퇴사(A02) 1명 10,000,000 | 1) 2021.1.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중도퇴사(A02) 1명 10,000,000 |
| 2) 2021.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명 130,000,000* | 2) 2021.3.10. 원천세 신고서 반영 ⇒ 연말정산(A04) 1명 120,000,000 |

* 중도퇴사 1명 지급액 10,000,000원을 중도퇴사(A02)와 연말정산(A04)에 중복 신고

- 원천세 수정 신고·납부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후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

사례

- (개요) 2021.6월 A기관의 근로자 홍길동의 5월분 근로소득 3,000,000원(소득세 1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1.7.10. 원천세 수정신고 및 납부
- (6월 신고) 2021.6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10명 지급액 30,000,000원(소득세 1,000,000원)
- (5월 신고) 2021.5월분 A기관의 급여 지급 9명 지급액 27,000,000원(소득세 900,000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 ※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등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근로소득자에게 징수하여 납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천징수 신고 관련 주요 오류 유형

|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세액만 납부 | 해당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
| 귀속연월, 지급연월 등을 잘못 구분하여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 |
| 당월 2회 이상 급여 지급하면서 지급시마다 따로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합산하여 신고·납부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누락 |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 |
| 중도퇴사자에 대한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 계속 근로자분과 함께 제출 |
| 계약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일반 근로자와 함께 제출 |
|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작성·제출 |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 국세청, 2021. 8

-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코로나 위기 상황에 올라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최고급 승용차 구입 등 나 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 국세청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 최근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올라타 불법·불공정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이들은 법인 명의로 호화 요트·최고급 승용차·명품 등을 구입하며 나 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운영하면서도

【코로나19 극복·경제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업체, 매입증대·선결제 기업, 일자리 안정·창출 기업, 투자확대 기업, 창업기업·혁신 기업

* '21년 하반기부터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추가

-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탈세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 8. 13.)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II

조사대상 선정

-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점검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①,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②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유형①】**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약 10억 원), 최고급 승용차(5대 약 10억 원), 고가 명품시계 등(약 3억 원)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1억 원 이상)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유형②】**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

-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도 확인되었습니다.

III 지난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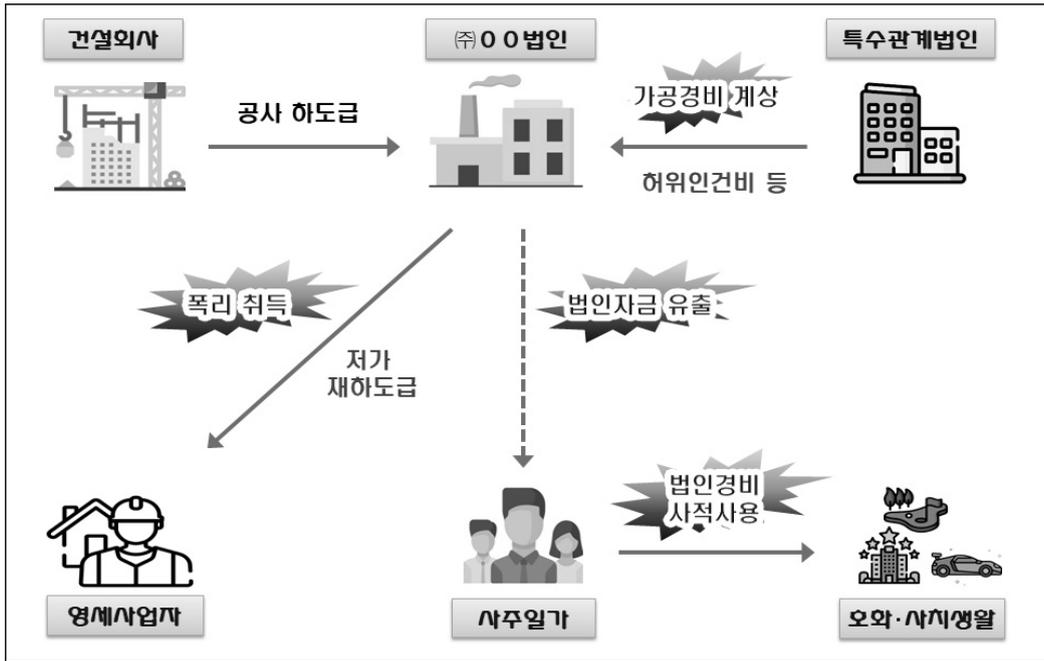
-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IV 향후 계획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여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격하고 바르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생과 포용을 통해 경제회복의 온기가 우리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되
 -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붙임 1 - 이번 착수 사례(3개)

사례 1 **과도한 단가인하로 폭리를 취한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 영세사업자와 불법 저가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은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며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하고,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또한,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 사주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사적용도의 최고급 자동차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 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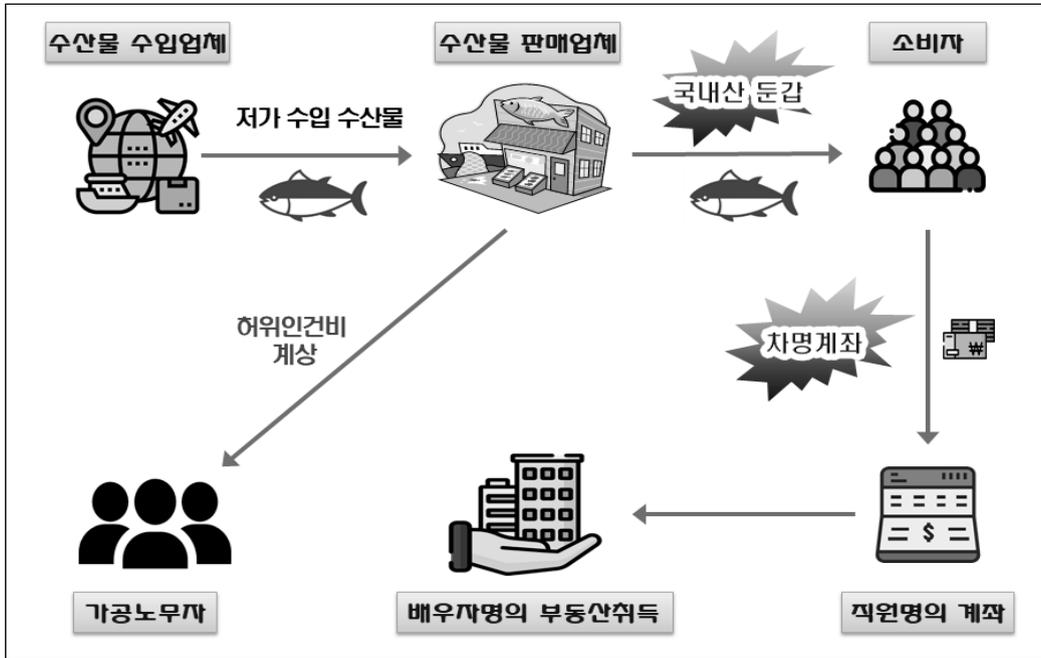
● 조사 방향

⇨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비용 사적사용 혐의 검증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수산물 판매업체

사례 2

*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수배 비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고, 판매대금은 직원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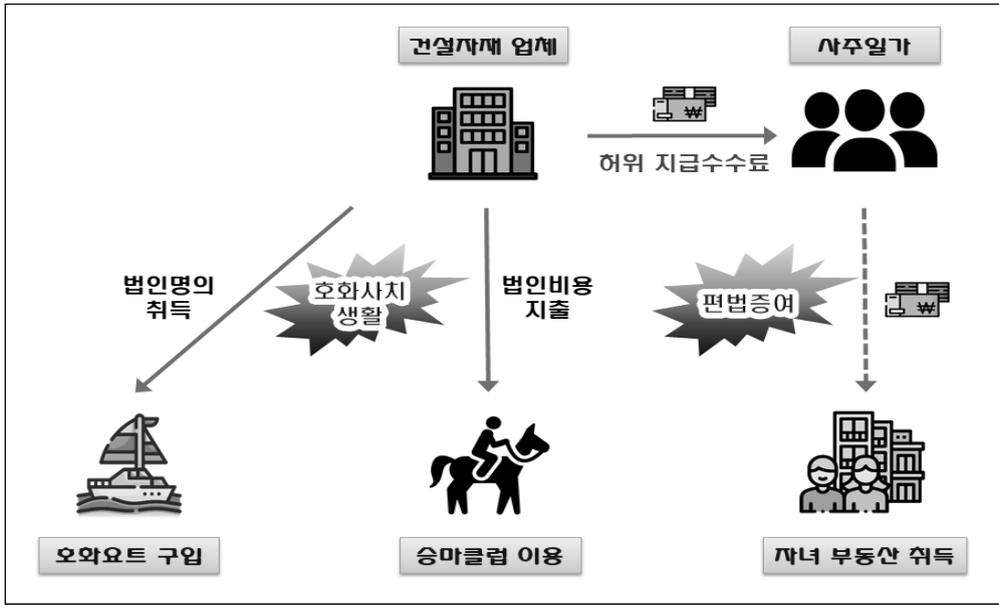
● 주요 탈루 혐의

- ○○○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 소비자들이 국내산 수산물을 선호하자 저가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거래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 탈루
-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 원 대 배우자 명의 임대용 꼬마빌딩을 구입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 조사 방향

⇨ 차명계좌 이용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3 **법인명의 고가요트 취득, 승마비용 지출 등 호화사치 건설자재 업체**
 * 친인척들에 대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호화요트·승마클럽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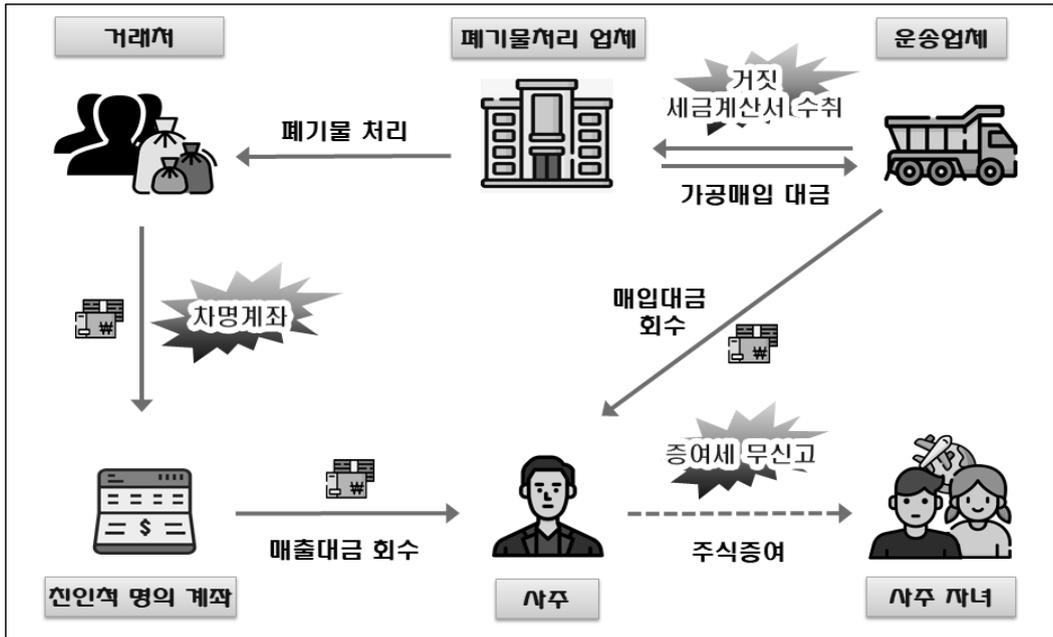
- ○○○은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로
 -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 법인명으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 원)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
 - 또한,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 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 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 허위 지급수수료, 법인경비 사적사용,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 2 - 지난 조사 사례(5개)

사례 1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수입을 누락한 폐기물처리 업체
* 폐기물처리 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 조사 내용

- ○○○은 오랜 기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중견업체로,
 -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 처리하면서 매출이 증가하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약 100여억 원)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 우월적 지위로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도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종용하며 차액(약 20억 원)을 돌려받아 소득 탈루
- 또한, 고의적인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한 법인의 주식을 해외 유학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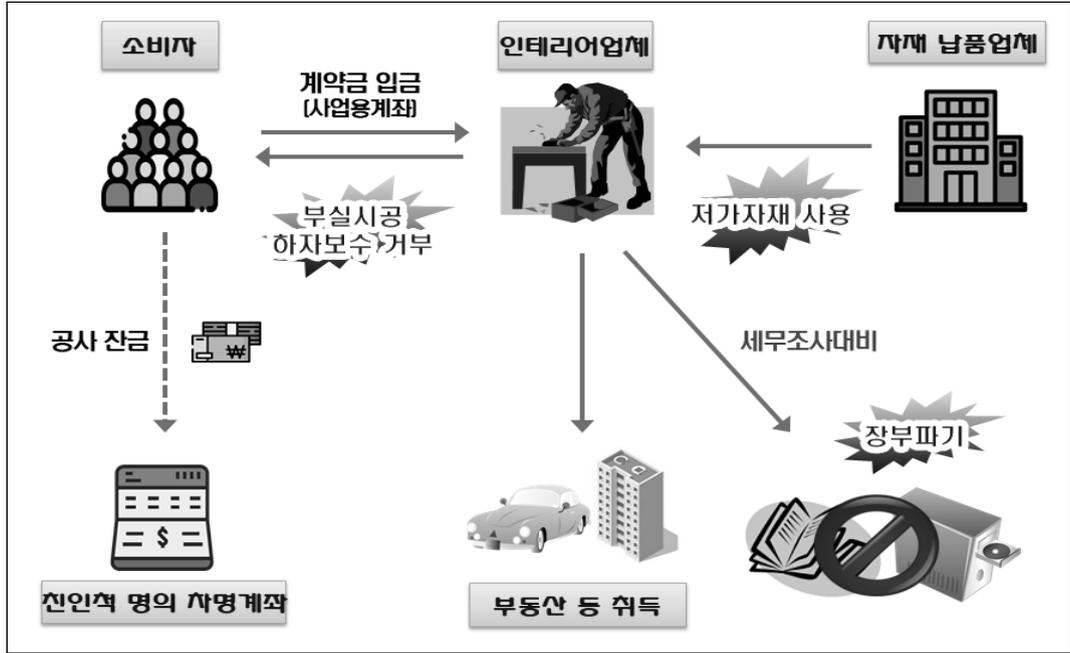
● 조사 결과

⇒ 법인세·증여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부실시공·하자보수 거부로 피해를 주는 인테리어 업체

사례 2

*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 거부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금액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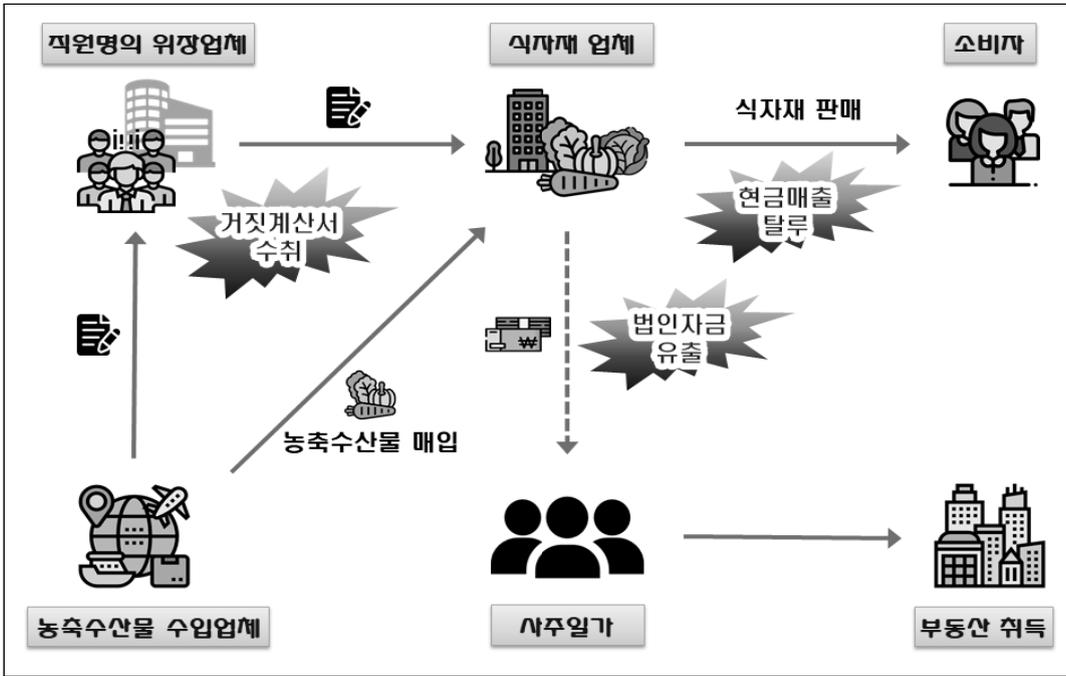
● 조사 내용

- ○○○은 최근 집꾸미기 수요 증가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로
 -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과는 다른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하자보수는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 탈루
 -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
- 탈루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사례 3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며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 업체**
 * 현금할인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산지 둔갑 및 거짓계산서 수수



- 조사 내용
 - ○○○은 농축수산물·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대형 식자재 업체로 지역 최저가 등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자
 - 현금판매 할인을 적극 홍보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고객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는 등 수입금액을 숨김
 - 농축수산물 수입업체 등과의 거래에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등 법인소득 탈루
 - 사주일가는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형성

- 조사 결과
 -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 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 9. 3.부터 2021. 9. 23.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공정위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1.12.3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 내용 요약 〉

| 고시명 | 주요 개정사항 | 비고 |
|---------------------------------|--|--------------------------------------|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 법개정사항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 공익법인과 자금지출, 자산,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 '특수관계인 지분을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 주요주주의 1% 이상 주식보유 변동한 경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 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 법개정사항 자체개선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법개정사항 |
| 2개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동일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법개정사항 |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①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②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

*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행위(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 규정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 ① (제명변경)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②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처분,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 * 동일인(자연인에 한함) 및 친족이 20%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
-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시기)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 ④ (공시절차)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⑤ (공시내용 및 서식)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 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 ⑥ (주요내용 변경)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 * 거래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 ⑦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 행위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다시 공시
 - 만기·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분기별 일괄 공시 가능
- ⑧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상품·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나 계약내용이 미확정되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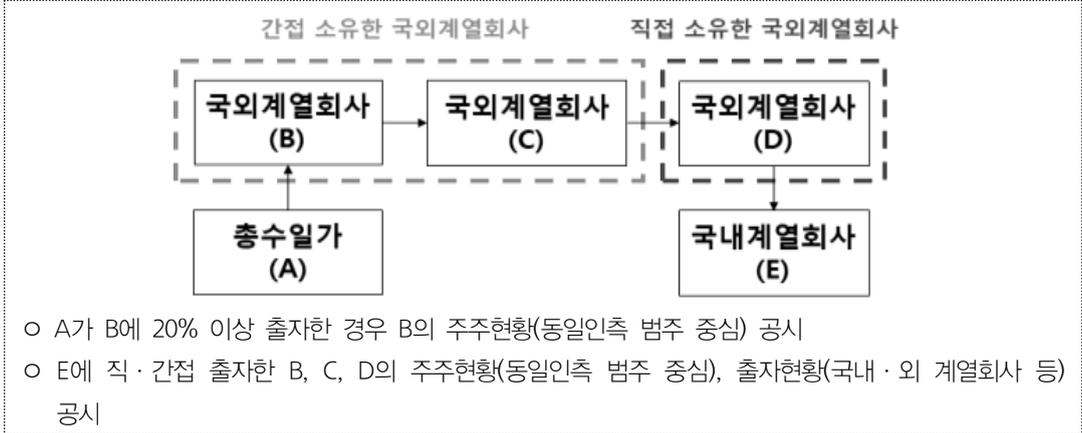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①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②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법 제28조제2항)

- * 공시대상 국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5항)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흐름도 〉



〈 개정내용 〉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 특히, 공시빈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기회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분기, 반기, 연1회(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7항) 중 연1회로 설정하였다.

* 공시대상회사는 주주현황을 연1회, 출자현황을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음

- ① (제명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② (성실이행의무등)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명시

③ (공시의무사항)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구체화

-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 주주현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작성

-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위와 동일하며, 그 외에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공시

④ (공시기준일·시기 및 빈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일)을 기준으로 매년 5



월 31일(연1회) 공시

- ⑤ (공시절차 및 양식)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양식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공시양식은 공정위가 정하는 공시양식에 따르며,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2.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관련

< 개정배경 >

-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의 내부거래 중 일부만 공시*하고 있다.
 - *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 중이며,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 공익법인 실태조사('18.1.~'18.3.)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약 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개정내용 >

- 이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신설하였다.

3.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개정배경 >

-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제32조제1항)
 - * 총수입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

< 개정내용 >

- 이에 맞추어 고시 개정안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4.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 (현행법 제23조의2)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개정법 제47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

5.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주요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시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고시 개정안에서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6. 공시 기준일 및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 기업집단현황 일부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두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 *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전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 기업집단지정일로 되어 있어 전년 기업집단지정일에 발생하는 현황을 중복하여 공시하게 됨
 - 윤년(閏年)의 경우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로 개선하였다.
 - * 분기별 공시기한을 2.28., 5.31., 8.31., 11.30.에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여 윤년의 경우 2.29.까지 공시하는 것을 인정
- 그 외에도 법 및 시행령과 다르게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상호채무보증→채무보증)를 법령과 일치시켰다.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 외에도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 변경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으로 하고,
 -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
- 감경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고,
 - 공익법인이 설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 동일인도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 변경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 설정
 -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범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감경하며,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 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12.30.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 중

| 구분 |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현황 공시 |
|-------|---|---|--|
| 근거 | 법 현행법 제11조의2 | 현행법 제11조의3 | 현행법 제11조의4 |
| 고시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규정 |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 도입 배경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이사회 책임강화와 사외이사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자발적인 경영행태 개선 (2000년) | ○공시를 통한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2005년) | ○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2009년) |
| 공시 주체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 공시 내용 | <대규모 내부거래> ○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 상품·용역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 | <소유지배구조 사항> ○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임원 변동 현황 |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손익현황 ○해외 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

| | | | |
|------------------|---|--|--|
| <p>공시 내용</p> | <p>결 및 공시 (상품용역 거래는 총수입 가 지분 20%이상 계열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 -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 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 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 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경쟁입찰·수의 계약 계약체결방식 등</p> | <p><재무구조 사항> ○ 자산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 증여 ○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증자 또는 감자 ○ 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사항> ○ 영업의 양도·양수 ○ 합병·분할 ○ 주식교환·이전 ○ 해산사유 발생 ○ 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 시·종료 등</p> | <p><임원·이사회 현황> ○ 임원 현황 및 변동 ○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 ○ 주주현황 ○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내부거래현황> ○ 자금 차입·대여 현황 ○ 유가증권 거래현황 ○ 상품·용역 거래현황 ○ 자산거래 현황 ○ 채권·채무 현황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 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현 황 ○ 지주회사와 자·손자·중손 회사 간 부동산임대료 거 래현황 ○ 지주회사와 자·손자·중손 회사 간 경영건설등수수 료 거래현황 ○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p> |
| <p>공시 주기</p> | <p>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1 일, 비상장 7일 이내</p> | <p>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p> | <p>연1회 또는 분기1회</p> |
| <p>개정 사항</p> | <p>공익법인 공시의무</p> | <p>소규모 비상장사 의무면제 주요주주 1%이상 주식소유 변동시 공시의무</p> | <p>동일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 무 공익법인과 거래현황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 열사 공시대상 확대</p> |